

시간제등록 입학원서

접수번호		과목	사회복지현장실습	학 번
		유형	별도반	※
지 원 자	성명		성 별	남 · 여
	주민등록번호		-	사 진 (최근 3개월 이내 촬영한 3×4cm)
	학 력	고등학교		
	주 소	□□□□□		
	E-mail	※ 정확하게 기재	전화 (휴대폰)	
직장명		직장전화		

선 이수 과목명 (성적 처리까지 완료된 과목만 체크 바랍니다.)

구분	교과목
전공필수 (4과목 이상)	<input type="checkbox"/> 사회복지개론 <input type="checkbox"/> 사회복지법제 <input type="checkbox"/> 사회복지실천기술론 <input type="checkbox"/> 사회복지실천론 <input type="checkbox"/> 사회복지정책론 <input type="checkbox"/> 사회복지조사론 <input type="checkbox"/> 사회복지행정론 <input type="checkbox"/> 인간행동과사회환경 <input type="checkbox"/> 지역사회복지론
전공선택 (2과목 이상)	<input type="checkbox"/> 아동복지론 <input type="checkbox"/> 청소년복지론 <input type="checkbox"/> 노인복지론 <input type="checkbox"/> 장애인복지론 <input type="checkbox"/> 여성복지론 <input type="checkbox"/> 가족복지론 <input type="checkbox"/> 산업복지론 <input type="checkbox"/> 의료사회사업론 <input type="checkbox"/> 학교사회사업론 <input type="checkbox"/> 정신건강론 <input type="checkbox"/> 교정복지론 <input type="checkbox"/> 사회보장론 <input type="checkbox"/> 사회문제론 <input type="checkbox"/> 자원봉사론 <input type="checkbox"/> 정신보건사회복지론 <input type="checkbox"/> 사회복지지도감독론 <input type="checkbox"/> 사회복지자료분석론 <input type="checkbox"/> 프로그램개발과평가 <input type="checkbox"/> 사회복지발달사 <input type="checkbox"/> 사회복지윤리와철학
실습예정지	<input type="checkbox"/> 대구 <input type="checkbox"/> 경북(지역명 기재)

상기 본인은 계명문화대학교 시간제등록을 목적으로 소정의 서류를 갖추어 지원합니다.

년 월 일

지 원 자 :

(인)

계명문화대학교 총장 귀하

※ 구비서류

1.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원본 1부
2. 선이수과목 이수 확인 증명서 1부(성적증명서 또는 성적확인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학습자)

계명문화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는 시간제등록제 운영 및 학점인정과 관련하여 귀하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 및 이용 하고자 합니다. 다음의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읽어보신 후, 동의 여부를 체크,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고유식별정보) [“필수”]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개인정보 이용기간 및 보유기간
주민등록번호(외국인 등록번호)	본인식별절차, 제증명서 발급, 면허(자격)증 발급, 학습지원시스템 이용	성적취득 및 자격발급시까지 활용, 영구보관

※귀하께서는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거부에 따른 불이익 : 위 제공사항은 시간제등록 운영 전반에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거부하실 경우 수강이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필수”]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개인정보 이용기간 및 보유기간
사진, 성명, 아이디, 비밀번호	본인식별절차에 이용	성적취득 및 자격발급시까지 활용, 영구보관
이메일주소, 연락처	공지사항, 서비스 정보의 제공	
주소	관련자료 발송 등	
응시자격 확인을 위한 사항(출신학교)	자격 확인	

※귀하께서는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거부에 따른 불이익 : 위 제공사항은 시간제등록 운영 전반에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거부하실 경우 수강이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본인은 본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서” 내용을 읽고 명확히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성 명 :

(인 또는 서명)

사회복지현장실습 신청서

실습생	성명		생년월일	
	주소	(우편번호 :)		
	교육훈련기관	계명문화대학교	연락처	
실습 기관	기관명		기관 연락처	전화 이메일
	※ 기관 공문 수신용			
기관주소	(우편번호 :)			
실습 지도자	성명		연락처	
	자격 사항	<input type="checkbox"/> 1급자격소지 3년 이상 실무경력 <input type="checkbox"/> 2급자격소지 5년 이상 실무경력 <input type="checkbox"/> 2020년에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 받은 자		
	자격번호 :		취득일 :	
[사회복지현장실습 기준] ■ 실습기관 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법인, 시설 또는 단체 2.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선정된 기관 ■ 실습지도자 1.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취득 후 3년 이상 사회복지 관련 실무경험이 있는 자 2.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취득 후 5년 이상 사회복지 관련 실무경험이 있는 자 3. 기관실습이 실시되는 연도의 전년도에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 받은 자				
실습 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주)			
실습 시간	1일 시간 / 총 120 시간			

실습신청자 :

(서명 또는 인)

계명문화대학교총장 귀하

실습생 서약서

본인은 제명문화대학교 사회복지상담과(시간제등록 별도반)의
실습생으로서 다음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사회복지사 윤리강령
2. 클라이언트와 기관에 대한 비밀 유지
3. 실습교육기관 및 실습지도자의 요구사항

 년 월 일

실습생 : (서명 또는 인)

제명문화대학교 귀중

실습생 프로파일

1. 인적사항

(사진)	실습생명		성별		생년월일	
	소속	계명문화대학교 사회복지상담과 2021학년도 1학기				
	주소					
	연락처		e-mail			

2. 이수 전공과목

구분	교과목명	이수 완료	현재 이수	교과목명	이수 완료	현재 이수	교과목명	이수 완료	현재 이수
전공 필수	사회복지개론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지역사회복지론			사회복지정책론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사회복지조사론			사회복지행정론			사회복지법제		
전공 선택	가족복지론			아동복지론			청소년복지론		
	노인복지론			여성복지론			장애인복지론		
	정신건강론			사회문제론			프로그램개발과 평가		
	학교사회사업론			사회복지윤리와 철학			정신보건사회복지론		
	자원봉사론			사회복지발달사			의료사회사업론		
	교정복지론			산업복지론			사회복지지도감독론		
	사회보장론			사회복지자료분석론					

3. 경력

구분 (취업, 실습, 봉사)	기관	기간	내용

4. 사회복지를 전공하게 된 동기

5. 실습 기관 선택 이유

6. 실습을 통해서 성취하고자 하는 목표

7. 실습을 마친 후 목표달성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기준

8. 사회복지를 실천하는데 있어 자신의 강점과 약점

1) 사회복지 지식 및 기술의 측면	2) 개인적인 특성 측면
---------------------	---------------

9. 취미 및 특기

10. 실습기관, 실습지도차 및 실습지도교수에게 바라는 점

현장실습 표준협약서

제1조(목적) 이 현장실습협약서는 (기관명) 대표(이하 "A"라 한다)와 계명문화대학교 사회복지 현장실습 시간제 등록생(이하 "B"이라 한다), 계명문화대학교 사회복지상담과(이하 "C"이라 한다) 상호 간 현장실습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성실하게 준수할 것을 약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현장실습기간 및 장소) ① 현장실습기간은 _____ (으)로 한다.

② 현장실습은 "A"의 산업현장시설을 이용하여 실시한다.

제3조(현장실습방법) 현장실습은 직업교육훈련과정에 의거 "A"와 "C"가 협의하여 작성한 현장실습계획에 따라 실시한다.

제4조(사업주의 의무) "A"는 현장실습이 내실 있게 실시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한다.

1. "B"의 전공과 희망을 고려하여 현장실습부서에 배치하고, "B"가 다양하고 폭넓은 현장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순환실습기회를 제공한다.
2. 현장실습에 필요한 시설, 공구, 재료 등을 준비한다.
3. 현장실습을 지도할 능력을 갖춘 담당자를 배치하여 "B"의 현장실습을 성실하게 지도한다.
4. "C"가 현장실습계약의 이행 여부 등을 확인하고자 할 경우 이에 협조하는 한편 그 확인결과를 현장실습에 반영하도록 노력한다.

제5조(현장실습생의 권리) ① "B"는 현장실습 시 산업현장의 적용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적절한 지도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B"는 현장실습기간에 산업재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③ "B"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장실습과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제6조(현장실습생의 의무) "B"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한다.

1. 현장실습과제를 성실하고 근면하게 수행한다.
2. 현장실습기간 중 사규 등 제반 수칙을 준수한다.
3. 현장실습을 위한 기계, 공구 기타 장비가 파손되거나 분실되지 않도록 주의 깊게 사용한다.
4. 현장실습 도중 알게 된 "A"의 기밀을 누설하지 않는다.

제7조(현장실습시간과 휴식) ① 현장실습시간은 1일 4시간 이상 8시간 이하로 한다.

② 현장실습 중 중식시간은 휴식시간으로 한다.

③ 휴일 및 휴가는 "A"가 취업규칙으로 정한 날로 한다.

제8조(복리후생) "A"는 "B"에게 식당, 휴게실, 의무실, 기숙사, 통근버스 등의 복리후생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한다.

제9조(현장실습의 평가) "A"는 "C"가 정한 기준에 따라 "B"의 현장실습내용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C"에게 통보한다.

제10조(안전·보건상의 조치) "A"는 "B"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B"에게 안전·보건교육 및 필요한 안전상의 조치하여야 한다.

제11조(재해보상) "B"가 현장실습 도중 그 현장실습에 의한 재해를 입은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보상규정에 준하는 재해보상을 한다.

제12조(현장실습내용의 변경) "A"는 현장실습생의 소질·건강·기능습득의 정도 또는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현장실습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B"와 "C"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14조(현장실습계약의 해지) ① "A"와 "B"는 현장실습 기간에 계약을 해지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계약해지일 5일 전에 해지예고를 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A"와 "B"는 "C"와 미리 협의한다.

② 계약해지의 고지는 서면으로 하며 해지 예고 시에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야 한다.

제15조(현장실습중단 방지) "A"는 "A"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B"의 현장실습이 중단될 때는 "A"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직종의 다른 현장실습산업체로 "B"를 알선하는 등 "B"의 현장실습이 중단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이 경우 "A"는 "C"와 사전에 협의한다.

제16조(취업) "A"는 현장실습수료자에 대하여 우선으로 채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수료증명서) ① "A"는 현장실습기간이 종료되었을 때에는 "B"에게 현장실습 수료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다.

② "A"는 계약기간 종료 전에 현장실습계약이 해지되었을 때는 "B"가 습득한 과정명과 기간을 기재한 증명서를 "B"에게 교부할 수 있다.

제18조(준용) 이 협약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직업교육훈련촉진법, 근로기준법, "A"의 취업규칙을 준용한다.

본 협약서는 3부를 작성하여 "A", "B", "C"가 기명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A) 기관명 : _____ (B) 생년월일 : _____ (C) 계명문화대학교
대표자 : _____ (직인) 성 명 : _____ (서명) 평생교육원장 (직인)

현장실습 표준협약서

제1조(목적) 이 현장실습협약서는 (기관명) 대표(이하 "A"라 한다) 와 계명문화대학교 사회복지 현장실습 시간제 등록생(이하 "B"이라 한다), 계명문화대학교 사회복지상담과(이하 "C"이라 한다) 상호 간 현장실습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성실하게 준수할 것을 약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현장실습기간 및 장소) ①현장실습기간은 _____ (으)로 한다.

②현장실습은 "A"의 산업현장시설을 이용하여 실시한다.

제3조(현장실습방법) 현장실습은 직업교육훈련과정에 의거 "A"와 "C"가 협의하여 작성한 현장실습계획에 따라 실시한다.

제4조(사업주의 의무) "A"는 현장실습이 내실 있게 실시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한다.

1. "B"의 전공과 희망을 고려하여 현장실습부서에 배치하고, "B"가 다양하고 폭넓은 현장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순환실습기회를 제공한다.
2. 현장실습에 필요한 시설, 공구, 재료 등을 준비한다.
3. 현장실습을 지도할 능력을 갖춘 담당자를 배치하여 "B"의 현장실습을 성실하게 지도한다.
4. "C"가 현장실습계약의 이행 여부 등을 확인하고자 할 경우 이에 협조하는 한편 그 확인결과를 현장실습에 반영하도록 노력한다.

제5조(현장실습생의 권리) ①"B"는 현장실습 시 산업현장의 적용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적절한 지도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B"는 현장실습기간에 산업재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③"B"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장실습과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제6조(현장실습생의 의무) "B"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한다.

1. 현장실습과제를 성실하고 근면하게 수행한다.
2. 현장실습기간 중 사규 등 제반 수칙을 준수한다.
3. 현장실습을 위한 기계, 공구 기타 장비가 파손되거나 분실되지 않도록 주의 깊게 사용한다.
4. 현장실습 도중 알게 된 "A"의 기밀을 누설하지 않는다.

제7조(현장실습시간과 휴식) ①현장실습시간은 1일 4시간 이상 8시간 이하로 한다.

②현장실습 중 중식시간은 휴식시간으로 한다.

③휴일 및 휴가는 "A"가 취업규칙으로 정한 날로 한다.

제8조(복리후생) "A"는 "B"에게 식당, 휴게실, 의무실, 기숙사, 통근버스 등의 복리후생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한다.

제9조(현장실습의 평가) "A"는 "C"가 정한 기준에 따라 "B"의 현장실습내용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C"에게 통보한다.

제10조(안전·보건상의 조치) "A"는 "B"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B"에게 안전·보건교육 및 필요한 안전상의 조치하여야 한다.

제11조(재해보상) "B"가 현장실습 도중 그 현장실습에 의한 재해를 입은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보상규정에 준하는 재해보상을 한다.

제12조(현장실습내용의 변경) "A"는 현장실습생의 소질·건강·기능습득의 정도 또는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현장실습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B"와 "C"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14조(현장실습계약의 해지) ①"A"와 "B"는 현장실습 기간에 계약을 해지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계약해지일 5일 전에 해지예고를 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A"와 "B"는 "C"와 미리 협의한다.

②계약해지의 고지는 서면으로 하며 해지 예고 시에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야 한다.

제15조(현장실습중단 방지) "A"는 "A"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B"의 현장실습이 중단될 때는 "A"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직종의 다른 현장실습산업체로 "B"를 알선하는 등 "B"의 현장실습이 중단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이 경우 "A"는 "C"와 사전에 협의한다.

제16조(취업) "A"는 현장실습수료자에 대하여 우선으로 채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수료증명서) ①"A"는 현장실습기간이 종료되었을 때에는 "B"에게 현장실습 수료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다.

②"A"는 계약기간 종료 전에 현장실습계약이 해지되었을 때는 "B"가 습득한 과정명과 기간을 기재한 증명서를 "B"에게 교부할 수 있다.

제18조(준용) 이 협약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직업교육훈련촉진법, 근로기준법, "A"의 취업규칙을 준용한다.

본 협약서는 3부를 작성하여 "A", "B", "C"가 기명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A) 기관명 : _____ (B) 생년월일 : _____ (C) 계명문화대학교
대표자 : _____ (직인) 성 명 : _____ (서명) 평생교육원장 (직인)

현장실습 표준협약서

제1조(목적) 이 현장실습협약서는 (기관명) 대표(이하 "A"라 한다) 와 계명문화대학교 사회복지 현장실습 시간제 등록생(이하 "B"이라 한다), 계명문화대학교 사회복지상담과(이하 "C"이라 한다) 상호 간 현장실습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성실하게 준수할 것을 약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현장실습기간 및 장소) ①현장실습기간은 _____ (으)로 한다.

②현장실습은 "A"의 산업현장시설을 이용하여 실시한다.

제3조(현장실습방법) 현장실습은 직업교육훈련과정에 의거 "A"와 "C"가 협의하여 작성한 현장실습계획에 따라 실시한다.

제4조(사업주의 의무) "A"는 현장실습이 내실 있게 실시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한다.

1. "B"의 전공과 희망을 고려하여 현장실습부서에 배치하고, "B"가 다양하고 폭넓은 현장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순환실습기회를 제공한다.
2. 현장실습에 필요한 시설, 공구, 재료 등을 준비한다.
3. 현장실습을 지도할 능력을 갖춘 담당자를 배치하여 "B"의 현장실습을 성실하게 지도한다.
4. "C"가 현장실습계약의 이행 여부 등을 확인하고자 할 경우 이에 협조하는 한편 그 확인결과를 현장실습에 반영하도록 노력한다.

제5조(현장실습생의 권리) ①"B"는 현장실습 시 산업현장의 적용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적절한 지도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B"는 현장실습기간에 산업재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③"B"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장실습과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제6조(현장실습생의 의무) "B"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한다.

1. 현장실습과제를 성실하고 근면하게 수행한다.
2. 현장실습기간 중 사규 등 제반 수칙을 준수한다.
3. 현장실습을 위한 기계, 공구 기타 장비가 파손되거나 분실되지 않도록 주의 깊게 사용한다.
4. 현장실습 도중 알게 된 "A"의 기밀을 누설하지 않는다.

제7조(현장실습시간과 휴식) ①현장실습시간은 1일 4시간 이상 8시간 이하로 한다.

②현장실습 중 중식시간은 휴식시간으로 한다.

③휴일 및 휴가는 "A"가 취업규칙으로 정한 날로 한다.

제8조(복리후생) "A"는 "B"에게 식당, 휴게실, 의무실, 기숙사, 통근버스 등의 복리후생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한다.

제9조(현장실습의 평가) "A"는 "C"가 정한 기준에 따라 "B"의 현장실습내용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C"에게 통보한다.

제10조(안전·보건상의 조치) "A"는 "B"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B"에게 안전·보건교육 및 필요한 안전상의 조치하여야 한다.

제11조(재해보상) "B"가 현장실습 도중 그 현장실습에 의한 재해를 입은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보상규정에 준하는 재해보상을 한다.

제12조(현장실습내용의 변경) "A"는 현장실습생의 소질·건강·기능습득의 정도 또는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현장실습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B"와 "C"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14조(현장실습계약의 해지) ①"A"와 "B"는 현장실습 기간에 계약을 해지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계약해지일 5일 전에 해지예고를 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A"와 "B"는 "C"와 미리 협의한다.

②계약해지의 고지는 서면으로 하며 해지 예고 시에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야 한다.

제15조(현장실습중단 방지) "A"는 "A"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B"의 현장실습이 중단될 때는 "A"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직종의 다른 현장실습산업체로 "B"를 알선하는 등 "B"의 현장실습이 중단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이 경우 "A"는 "C"와 사전에 협의한다.

제16조(취업) "A"는 현장실습수료자에 대하여 우선으로 채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수료증명서) ①"A"는 현장실습기간이 종료되었을 때에는 "B"에게 현장실습 수료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다.

②"A"는 계약기간 종료 전에 현장실습계약이 해지되었을 때는 "B"가 습득한 과정명과 기간을 기재한 증명서를 "B"에게 교부할 수 있다.

제18조(준용) 이 협약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직업교육훈련촉진법, 근로기준법, "A"의 취업규칙을 준용한다.

본 협약서는 3부를 작성하여 "A", "B", "C"가 기명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A) 기관명 : _____ (B) 생년월일 : _____ (C) 계명문화대학교
대표자 : _____ (직인) 성 명 : _____ (서명) 평생교육원장 (직인)